

#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

의안 번호	11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5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정이유

- 시민의 알권리 총족을 위하여 현재 시에서 매월 2회 발행하고 있는 시정 소식지 "굿모닝안산"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시의 대표적인 시정 및 지역소식에 대한 정보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"굿모닝안산"은 타블로이드( $36\text{cm} \times 24\text{cm}$ )로 하고, 매월 2회 발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특집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).
- 나. "굿모닝안산"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·발행하기 위하여 굿모닝안산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함 (안 제6조).
- 다. 일반 및 학생명예기자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10조).
- 라.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1조).
- 마.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2조).

## 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 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지방자치법 제9조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연 18,600천원

- 편집위원 수당 : 50,000원×6명×24회 = 7,200,000원
- 명예기자 활동비 : 100,000원×6명×12월 = 7,200,000원
- 원고료 : 3,500원×10매×5건×24회 = 4,200,000원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03. 2. 20. ~ 2002. 3. 12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시신문 제작 개선 추진계획서(방침결정)
- 2003 「굿모닝 안산」 명예·편집기자 운영계획서

#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시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발행인) 안산시시정소식지의 명칭은 “굿모닝안산”이라 하고, 발행인은 시장이 된다.

제3조 (규격 및 발행) “굿모닝안산”的 규격은 타블로이드(36센티미터×24센티미터)로 하고, 매월 2회 발행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

제4조 (배부대상) “굿모닝안산”的 배부대상은 안산시 주민 전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내 시·군 및 유관기관과 기타 필요로 하는 기관(단체)에 배부할 수 있다.

제5조 (게재내용) “굿모닝안산”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.

1. 국정·도정·시정·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
2. 문화·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
3. 주민의견 및 투고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 (편집위원회) “굿모닝안산”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·발행하기 위하여 굿모닝안산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 (구성 등)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  
②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, 언론·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·방송관련

분야 전공자종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** (회의) ①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월2회 위원장이 소집·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·개최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9조** (기능)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시정홍보 내용의 심의·조정
2.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
3.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 수립
4. 명예기자의 활동 방향 설정
5. 기타 “굿모닝안산”의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

**제10조** (명예기자) ①시장은 “굿모닝안산”的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0명이내의 일반명예기자를 둔다.

②일반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.

③일반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시장은 청소년에게 자기계발 및 참여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명예기자를 선발·운영할 수 있다.

⑤학생명예기자는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당 1명을 선발한다.

**제11조** (수당 및 원고료 등) ①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일반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.

**제12조 (해촉 등)** ①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할 경우

2.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4회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

3.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

②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할 경우

2.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

3.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

**제13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공보담당관실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공보담당관 이 권 헌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홍보기획담당 김 제 교
	담당자 성명·전화	안 성 영 (행정 2065)